

근로자의 **안전·보건**을 **유지·증진**하기 위해서

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·제출하여 심사·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!

- ☑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를 설치·이전 할 때
- ☑ 특정한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설치·이전 할 때
- ☑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



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란?

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설치·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·제출 및 심사·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·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**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**하기 위한 **법정 제도**입니다.



관련근거

- ▶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2조(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 등) 제43조(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)
 - 미제출 등 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-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- ▶ 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·심사·확인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50호)

01

제출대상 사업장

☑ 대상업종

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

업종코드	한국표준산업분류(중분류)	업종코드	한국표준산업분류(중분류)
10***	식품 제조업	261**	반도체 제조업
16***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: 가구제외	262**	전자부품 제조업
20***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: 의약품 제외	29***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22***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30***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23***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32***	가구 제조업
24***	1차 금속 제조업	33***	기타 제품 제조업
25***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		

※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[2009.2.1. 이후 적용]
 ※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, 반도체 제조업, 전자부품 제조업 [2014.9.13. 이후 적용]
 ※ 상기 외 8개 업종 [2012.7.1. 이후 적용]

13개 업종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

- ① 증설,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되는 경우
- ②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되는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

☑ 대상설비

다음 중,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

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

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(爐)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

② 화학설비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“특수화학설비”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[별표 9]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

특수화학설비란?

-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
- 증류·정류·증발·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
-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
-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
-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
- 가열로 또는 가열기

③ 건조설비

건조기본체, 가열장치,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-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
- 도로,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
-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

④ 가스집합 용접장치

용접·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,000kg 이상인 것

⑤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전체환기장치, 밀폐설비

- 「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」 [별표 1]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·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·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[별표 16]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(이동식은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. 다만,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m³/분 이상인 것에 한함

- 「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」 [별표 1]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 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·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·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[별표 16]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(이동식은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. 다만,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m³/분 이상인 것에 한함

「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」 [별표 1]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

• 디아니시딘과 그 염	• 니켈(불용성 무기화합물)	• 스티렌
•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	• 디메틸포름아미드	• 시클로헥사는
• 베릴륨	• 벤젠	• 아닐린
• 벤조트리클로리드	• 이황화탄소	• 아세토니트릴
•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	• 카드뮴 및 그 화합물	• 아연(산화아연)
• 석면	• 톨루엔-2,4-디아소시아네이트	• 아크릴로니트릴
• 알파-나프틸아민과 그 염	• 트리클로로에틸렌	• 아크릴아미드
• 염화비닐	• 포름알데히드	• 알루미늄
• 오로토-톨리딘과 그 염	• 메틸클로포름 (1,1,1-트리클로로에탄)	• 디클로로메탄(염화메틸렌)
• 크롬광	• 크롬산 아연	• 용접흄
• 황화나켈	• 황화나켈	• 유라규산
• 휘발성 폴타르피치	• 2-브로모프로판	• 코발트
• 2-브로모프로판	• 6가크롬 화합물	• 크롬
• 납 및 그 무기화합물	• 브롬화메틸	• 탈코(황석)
• 노알렉산	• 수은	• 톨루엔
		• 황산알루미늄
		• 황화수소

☞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

☞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12]

☞ 분진작업의 종류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16]

☞ 5개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관해서는 「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·심사·확인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1항제6호 참조

☑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

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·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

02

제출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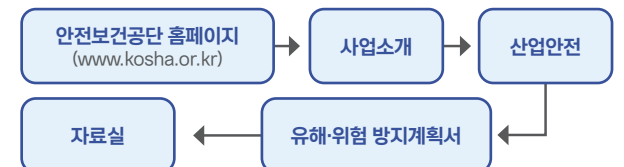
☑ 제출주체
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

☑ 작성방법
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는 유자격자*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

* 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·심사·확인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50호) 제7조 참조



※ 제공자료 : 관련법령 및 고시, 신청서, 제출서식 작성모델 등

☑ **제출시기**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

“해당 작업시작”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,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 한다. 다만, 기존공장, 임대공장,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

☑ **제출방법**

(직접 제출)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광역본부·지역본부·지사,
(온라인 제출) 제2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홈페이지
(www.kosha.or.kr/hpp/)

☑ **제출서류**
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계획서
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2부(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로 제출)

대상업종

- 신청서(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, 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)
- 사업 개요(고시 별지 제3호 서식)
-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
- 기계·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
- 기계·설비의 배치도면
-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,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
- 공정배관 · 계장도(Piping & Instrument Diagram, P&ID)
※ 안전보건규칙 [별표 1]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함
- 설비 및 기계 목록(고시 별지 제4호 서식)
- 유해·위험물질 목록(고시 별지 제5호 서식)
- 방폭전기/계장 기계·기구 선정기준(고시 별지 제6호 서식)
- 환기장치 개요(고시 별지 제7호 서식)
-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(고시 별지 제8호 서식)
-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(전기보호장치 포함)
※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은 생략 가능
-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
- 유해·위험요인 평가서(고시 별지 제9호 서식)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서
- 화재·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
※ 안전보건규칙 [별표 9]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·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에 한함

대상설비

〈공통서류〉

- 신청서(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, 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)
- 사업개요(고시 별지 제3호 서식)
-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
- 설비의 도면
-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(Process Flow Diagram, PFD)
-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
- 방폭 전기/계장 기계·기구 선정 기준(고시 별지 제6호 서식)

① 용해로

-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
-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- 용해로의 사양서
※ 종류, 형식, 능력, 제조자 및 제조연월, 가열방법(열원의 종류), 표준(최대)투입량, 온도·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
-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
- 용융물 누출,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

② 화학설비

- 주요 부속설비(소화설비 포함)의 구조 및 배치도면
-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설비,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- 공정배관·계장도(Piping & Instrument Diagram, P&ID)
- 유해·위험물질 목록(고시 별지 제5호 서식)
-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(고시 별지 제8호 서식)
- 장치 및 설비명세(고시 별지 제10호 서식)
- 화재·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

③ 건조설비

- 주요 부속설비(소화설비 포함)의 구조 및 배치도면
-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- 건조설비의 사양서
※ 종류, 형식, 능력, 제조자 및 제조연월, 가열방법(열원의 종류), 표준(최대)투입량, 온도·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
-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
- 환기장치,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, 그 밖의 부속 설비의 구조, 재질 및 성능
- 전기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

④ 가스집합 용접장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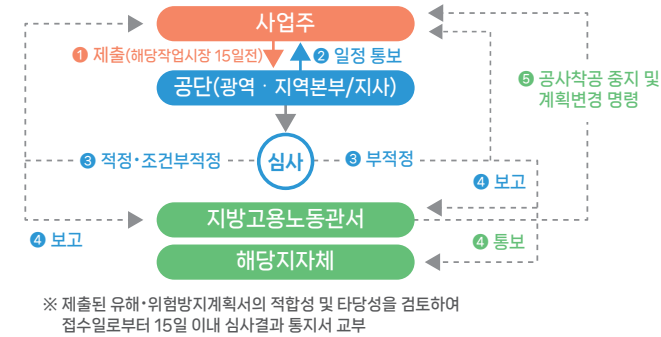
- 주요 부속설비(소화,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 포함)의 구조 및 배치도면
- 해당 가스장치설(저장설비) 및 주요 부속설비(소화설비를 포함)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-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, 제조자 및 제조연월
- 안전기의 종류, 형식, 제조자, 제조연월, 수량, 구조 및 재질
-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, 재질 및 성능

⑤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전체환기장치, 밀폐설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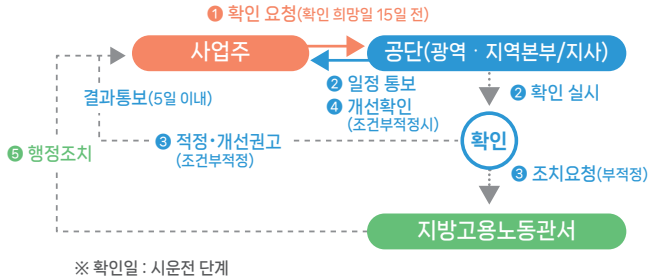
-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- 유해 · 위험물질 목록(고시 별지 제5호 서식)
- 환기장치 개요(고시 별지 제7호 서식)
- 해당 설비의 종류, 형식, 능력, 제조자 및 제조연월
-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, 재질 및 성능

03 심사 및 확인 절차

☑ **심사절차**



☑ **확인절차**



04 심사 수수료

☑ **수수료 (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7호)**

- 심사 수수료 납부 :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

종 류	규 모	수수료(원)
13개 업종에서 일반설비를 설치·이전하는 경우	가.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나. 전기계약용량이 2,000kW 미만 다. 전기계약용량이 2,000kW 이상	84,000 123,000 183,000
13개 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·이전· 변경하는 경우	-	67,000
5개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설치·이전하는 경우	가. 3기 미만 나. 6기 미만 다. 6기 이상	44,000 58,000 67,000
5개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	-	36,000

온라인 QR 안내



사업안내

(제출대상, 제출서류, 컨설팅기관 안내 등)

온라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/심사
(<http://kosha.or.kr/hpp/>)



알아두면 안전보건에 도움이 되는 정보



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
(<http://koshahub.or.kr>)

▶ 중대재해처벌법(공포 2021.1.26.)

- 중대재해처벌법이란?
-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주 또는 경영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규

▶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

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란?
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
- 컨설팅 대상 :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

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(<http://kosha.or.kr>)
사업소개 →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


위험성평가 시스템
(<http://kras.kosha.or.kr/kras24>)
위험성평가 안내

▶ 위험성평가 컨설팅 제도 안내

- 위험성평가란?
-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진행하는 컨설팅
- 컨설팅 대상 :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등



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

기관명	전화번호	관할지역
서울광역시본부	02-6711-2961	서울특별시 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서초구, 강남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
강원지역본부	033-815-1032	강원도 춘천시, 원주시, 홍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, 횡성군, 경기도 가평군
서울남부지사	02-6924-8737	서울특별시 영등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
서울동부지사	02-2086-8022	서울특별시 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
강원동부지사	033-820-2531	강원도 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양양군, 고성군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
부산광역시본부	051-520-0524	부산광역시
울산지역본부	052-226-0530	울산광역시
경남지역본부	055-269-0552	경상남도(경상남도 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 제외)
경남동부지사	055-371-7543	경상남도 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
광주광역시본부	062-949-8763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 나주시, 화순군, 곡성군, 구례군, 담양군, 장성군, 영광군, 함평군
전북지역본부	063-240-8531	전라북도 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, 완주군, 진안군, 무주군
전남지역본부	061-288-8732	전라남도 목포시, 무안군, 영암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장흥군, 진도군, 신안군
제주지역본부	064-797-7512	제주특별자치도
전북서부지사	063-460-3621	전라북도 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
전남동부지사	061-689-4953	전라남도 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
대구광역시본부	053-609-0552	대구광역시 중구, 동구, 북구, 수성구, 경상북도 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, 군위군
경북지역본부	054-478-8027	경상북도 구미시, 김천시, 영주시, 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, 봉화군, 예천군, 의성군, 영양군, 청송군
대구서부지사	053-650-6833	대구광역시 서구, 남구, 달서구, 달성군, 경상북도 칠곡군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), 고령군, 성주군
경북동부지사	054-271-2044	경상북도 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
인천광역시본부	032-510-0603	인천광역시
경기북부지사	031-828-1931	경기도 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
경기중부지사	032-680-6522	경기도 부천시, 김포시
고양파주지사	031-540-3841	경기도 고양시, 파주시
경기지역본부	031-259-7114	경기도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
경기서부지사	031-481-7513	경기도 광명시, 안양시, 관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안산시, 시흥시
경기동부지사	031-785-3325	경기도 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
경기남부지사	031-690-1931	경기도 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
대전세종광역시본부	042-620-5691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보령시, 금산군, 홍성군, 서천군, 부여군, 청양군
충북지역본부	043-230-7121	충청북도 청주시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옥천군, 영동군
충남지역본부	041-570-3433	충청남도 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서산시, 예산군, 태안군
충북북부지사	043-849-1042	충청북도 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